스위스 연방헌법(상)[1)]

(전문부터 제93조까지)

목차

전문

제1편 총강(제1조～제6조)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제1장 기본권(제7조～제36조)

제2장 국적, 시민권 및 참정권(제37조～제40조)

제3장 사회적 목적(제41조)

제3편 연방(Confédération), 주(cantons), 시(communes)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제1절 연방 및 주의 사무(제42조～제43a조)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제44조～제49조)

제3절 자치단체(제50조)

제4절 연방 보장(제51조～제53조)

제2장 권한

제1절 외국과의 관계(제54조～제56조)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제57조～제61조)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제61a조～제72조)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제73조～제80조)

제5절 공공 공사 및 교통(제81조～제88조)

제6절 에너지 및 통신(제89조～제93조)

전문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1) 2018. 9. 23. 개정된 것. 스위스 연방헌법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레토로망어(romanche)로 각각 작성되었으며, 본 번역문은 프랑스어로 작성된 스위스 연방헌법을 번역한 것임.

*스위스의 국민과 주(canton)*는,

천지창조에 대한 책임을 유념하고,

자유, 민주주의, 독립 및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한 연대의식과 개방정신으로
연대를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속에서
다양성을 함께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공동의 성과와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며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롭다는 것과
공동체의 힘은 가장 약한 구성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편 총강

제1조 (스위스 연방)

스위스 국민과 취리히(Zurich), 베른(Berne), 루체른(Lucerne), 우리(Uri), 슈비츠(Schwyz), 오프발트(Obwald), 니트발트(Nidwald), 글라루스(Glaris), 추크(Zoug), 프라이부르크(Fribourg), 졸로투른(Soleure), 바젤슈타트(Bâle-Ville) 및 바젤란트(Bâle-Campagne), 샤프하우젠(Schaffhouse), 아펜첼 아우터 로덴(Appenzell Rhodes-Extérieures) 및 아펜첼 이너 로덴(Appenzell

Rhodes-Intérieures), 세인트 갈(Saint-Gall), 그리손(Grisons), 아르가우(Argovie), 투르가우(Thurgovie), 티치노(Tessin), 파트(Vaud), 팔라이스(Valais), 뇌샤텔(Neuchâtel), 제네바(Genève) 및 쥐라(Jura) 주는 스위스 연방을 구성한다.

제2조 (목적)

① 스위스 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

② 스위스 연방은 국가의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 내부결속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③ 스위스 연방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

④ 스위스 연방은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 및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 (주)

주(州)는 연방헌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향유하며,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제4조 (국어)

국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레토로망어(romanche)이다.

제5조 (법치국가의 원리)

① 법률은 국가 활동의 근거이자 한계이다.

② 국가의 활동은 공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및 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④ 연방 및 주는 국제법을 준수한다.

제5a조 (보충성의 원칙)

국가의 임무에 대한 분배(attribution) 및 수행은 보충성의 원칙(principe de subsidiarité)에 입각한다.

제6조 (개인적·사회적 책임)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의 능력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공헌한다.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제1장 기본권

제7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8조 (평등)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출신,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사회적 지위, 생활방식,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신념이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특히 가정, 교육 및 근로의 영역에 있어서 법상·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한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가치의 근로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제9조 (자의로부터 보호 및 신의성실 원칙의 보장)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이지 아니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생명권 및 개인적 자유)

①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된다.

② 모든 사람은 특히 신체적·정신적 완전성과 신체의 자유와 같은 개인적 자유를 가진다.

③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은 금지된다.

제11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① 아동 및 청소년은 그들의 완전성을 보호받을 권리와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아동 및 청소년은 그들의 판단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12조 (곤궁에 처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곤궁에 처한 상태에 있는 자 및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보조·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사생활의 보호)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지, 서신, 및 우편·통신상의 교류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혼인 및 가족형성의 권리)

혼인 및 가족형성의 권리는 보장된다.

제15조 (양심 및 신앙의 자유)

① 양심 및 신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고 철학적 신념을 지닐 권리를 가지며,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종교 및 철학적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할 권리를 가지며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어느 누구도 종교단체에 가입·소속하는 것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상 및 정보의 자유)

① 사상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표현하며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언론의 자유)

① 출판,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공공통신에 기반을 둔 그 밖의 제작물 및 정보를 전파할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은 금지된다.

③ 편집 비밀은 보장된다.

제18조 (언어의 자유)

언어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19조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충분한 무상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

제20조 (학문의 자유)

학문 교육 및 연구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1조 (예술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2조 (집회의 자유)

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모든 사람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권리 또는 그러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결사의 자유)

①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모든 사람은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하거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도 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4조 (거주의 자유)

① 스위스 국민은 국가 내의 어디에서든지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스위스 국민은 출국하거나 입국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추방, 인도 및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① 스위스 국민은 스위스로부터 추방되지 아니하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에만 외국의 기관에 인도될 수 있다.

② 난민은 박해를 받은 국가에 강제적으로 송환되거나 그 국가 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26조 (재산권의 보장)

①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공용수용 또는 이에 상응한 재산권 제한에는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경제적 자유)

①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경제적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적 경제활동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활동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8조 (결사의 자유)

① 근로자, 사용자 및 그 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와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쟁의는 가능한 한 교섭 또는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③ 파업 및 직장폐쇄는 그것이 근로관계와 관련되고 평화로운 근로관계의 유지 및 중재 절차의 이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

④ 법률로써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파업을 금지할 수 있다.

제29조 (일반적 절차보장)

① 모든 사람은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 및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소송당사자는 청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 무상의 법률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a조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방과 주는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써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 (재판절차의 보장)

① 자신의 사건을 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할권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별법원은 금지된다.

② 민사소송의 피고는 그의 주소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른 재판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한다. 예외사항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자유의 박탈)

① 누구도 법률에 규정된 경우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 사유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즉시 고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친족에게 연락할 권리를 가진다.

③ 미결구금된 자는 지체 없이 법관의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관은 계속 구금할 것인지 또는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구금된 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법원의 명령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그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결한다.

제32조 (형사절차)

① 모든 사람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 모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 내용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고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상급법원에 의하여 재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방대법원(Tribunal fédéral)이 단독 심급으로 판결한 사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청원권)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autorités)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4조 (참정권)

① 참정권은 보장된다.

② 참정권의 보장은 시민의 의견 형성의 자유 및 시민의 의사의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보호한다.

제35조 (기본권의 실현)

① 기본권은 법질서 전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②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그들이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이 사인 간의 관계에서

도 존중되도록 노력한다.

제36조 (기본권의 제한)

① 기본권에 대한 모든 제한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중대한 제한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중대하고 직접적이며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권에 대한 모든 제한은 공익 또는 타인의 기본권 보호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③ 기본권에 대한 모든 제한은 그 목적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2장 국적, 시민권 및 참정권

제37조 (국적 및 시민권)

① 시(communal)의 시민권 및 주(canton)의 시민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스위스 시민권을 가진다.

② 누구도 시민권을 이유로 특혜나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의 법제가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동업조합의 재산분배와 같이 시민 계급(bourgeoisies) 및 동업조합(corporations) 내의 참정권을 정하기 위하여 이 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8조 (국적 및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① 연방은 혈통, 혼인, 입양에 의한 국적 및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규율한다. 연방은 기타 원인에 의거한 스위스 국적 상실 및 회복에 관하여도 규율한다.

② 연방은 주별로 외국인의 귀화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제정하고, 귀화를 허가한다.

③ 연방은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한다.

a. 제3세대 이민자

b. 무국적 아동

제39조 (참정권의 행사)

① 연방은 연방 차원의 참정권 행사를 정하고, 주는 주 및 시 차원의 참정권 행사를 정한다.

② 참정권은 거주지에서 행사한다. 연방 및 주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③ 누구도 1개를 초과하는 주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주는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한 날로부터 최장 3개월의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만 주 및 시 차원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40조 (재외국민)

① 연방은 재외국민들 간의 연대 및 재외국민과 스위스 간의 연대 강화에 기여한다. 연방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연방 사무에 관한 참정권 행사, 병역 또는 대체복무의 이행, 사회복지 및 사회보험과 같은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제3장 사회적 목적

제41조

① 연방 및 주는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자주성을 보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a.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의 혜택을 받는다.

b. 모든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는다.

c. 가정은 성인과 아동의 공동체로서 보호받고 장려된다.

d.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공평한 조건 하에서 행한 근로를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

e. 주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및 가족을 위하여 용인할 수 있는 조건의 적당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

f. 아동, 청소년 및 근로연령에 달한 자는 능력에 따라 초등교육 및 평생교육(formation continue)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 아동 및 청소년은 독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장려를 받으며, 그들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통합에 대하여 지원받는다.

② 연방 및 주는 모든 사람이 노령, 장애, 질병, 사고, 실업, 출산, 고아 및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부터 보호받도록 노력한다.

③ 연방 및 주는 헌법상의 권한과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어떠한 사회적 목적을 이유로 국가의 급부를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편 연방(Confédération), 주(cantons), 시(communes)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

제1절 연방 및 주의 사무

제42조(연방사무)

① 연방은 연방헌법에서 의하여 규정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삭제]

제43조(주사무)

주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사무를 정한다.

제43a조(국가사무의 분배 및 수행에 관한 원칙)

① 연방은 주에 의한 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연방의 통일적인 규제가 요구되는 사무만을 수행한다.

② 국가로부터 급부 혜택을 받은 모든 단체는 그 급부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국가로부터 받은 급부의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단체는 그 급부의 성격을 정한다.

④ 기초 급부는 같은 방법으로 모두에게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⑤ 국가사무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

제44조(원칙)

① 연방과 주는 그들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공조하며 상호 협력한다.

② 연방과 주는 상호 간에 존중하며 서로를 지원하여야 한다. 연방 및 주는 상호 간에 행정상·사법상의 지원을 행한다.

③ 주 상호 간 또는 주와 연방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교섭이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45조(연방 의사결정의 참여)

① 주는 연방헌법에서 정하는 경우 연방의 의사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에 참여한다.

② 연방은 주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충분하게 법률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에는 연방은 주와 협의한다.

제46조(연방법률의 시행)

① 주는 연방헌법 및 연방법제에 의거하여 연방법률을 시행한다.

② 연방 및 주는 연방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주가 달성할 목적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 및 주는 연방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③ 연방은 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제47조(주의 자치권)

① 연방은 주의 자치권을 존중한다.

② 연방은 주에게 충분한 고유사무를 보장하고, 주의 자치조직권을 존중한다. 연방은 주에게 충분한 재원을 보장하고, 주가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한다.

제48조(주 간의 협정)

① 주는 상호 간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의 조직 및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주는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위 조직 또는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주 간의 협정은 연방의 권리나 이익 또는 다른 주의 권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 간의 협정에 대하여 연방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주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주 간 기구로 하여금 해당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그 협정으로 정할 수 있다.

a. 협정이 다른 법률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채택되었을 것

b. 협정이 해당 규정의 개요를 설정할 것

⑤ 주는 주 간 법률을 준수한다.

제48a조 (일반적 구속력 선언 및 협정에의 가입의무)

① 관련 주의 요구에 따라 연방은 주 간 협정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 주가 주 간 협정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a. 형벌 및 처분의 집행

b. 제62조 제4항에 명시된 공교육 분야

c. 주립고등교육원(hautes écoles cantonales)

d. 초지역적 중요 문화기관

e. 폐기물 관리

f. 하수 정화

g. 도시권 교통

h. 첨단의학 및 특수병원

i. 장애인 사회통합 및 담당기관

② 일반적 구속력 선언은 연방법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③ 일반적 구속력 선언의 요건 및 협정가입의무와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49조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 및 준수)

① 연방법률은 이에 저촉되는 주법률에 우선한다.

② 연방은 주가 연방법률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제3절 자치단체

제50조

① 지방자치는 주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② 연방은 그 활동이 자치단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

③ 연방은 도시지역, 대도시지역 및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제4절 연방 보장

제51조(주헌법)

① 각 주는 민주적인 헌법을 가진다. 이 헌법은 주민의 동의를 요하며 유권자의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헌법은 연방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주헌법은 연방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보장된다.

제52조(헌법질서)

① 연방은 주의 헌법질서를 보호한다.

② 연방은 주의 질서가 교란되거나 위협을 받고, 해당 주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와 협력하여 그 질서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개입한다.

제53조(주의 존속, 지위 및 관할구역)

① 연방은 주의 존속 및 영역을 수호한다.

② 주의 숫자 또는 지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권자 및 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 및 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주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권자 및 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방의회에서 연방법령의 형식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④ 주경계의 변경은 해당 주간의 협정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권한

제1절 외국과의 관계

제54조 (외교)

① 외교는 연방의 관할사항이다.

② 연방은 스위스의 독립 및 번영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연방은 민생부담 경감, 빈곤퇴치, 인권존중, 민주주의, 국민들 간의 평화적 공존 및 천연자원 보전의 강화에 기여한다.

③ 연방은 주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55조 (주의 대외정책결정에의 참여)

① 주는 그 권한이나 본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② 연방은 주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협의한다.

③ 연방은 주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 경우에 주는 적절한 방식으로 국제교섭에 참여한다.

제56조(주와 외국의 관계)

① 주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 조약들은 연방의 법률이나 이익 또는 다른 주의 권리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방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주는 외국의 하급기관들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이 외의 주와 외국의 관계는 연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2절 안보, 국방, 민방위

제57조(안보)

① 연방 및 주는 각각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의 확보와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방 및 주는 국내 치안을 위하여 협력한다.

제58조(군대)

① 스위스는 군대를 보유한다. 군대는 본질적으로 민병(armée de milice)을 원칙으로 하여 조직된다.

② 군대는 전쟁방지 및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군대는 국가 및 국민을 방어한다. 군대는 국내의 치안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상황 또는 기타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경우에 민간기관을 지원한다. 법률은 이 외의 임무를 정할 수 있다.

③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제59조(병역 및 대체복무)

①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대체복무(service civil de remplacement)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스위스 여성은 자원하여 군복무를 할 수 있다.

③ 병역 또는 대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스위스 국적의 남성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 세금은 연방이 부과하되, 주가 확정하고 징수한다.

④ 연방은 병역 또는 대체복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⑤ 병역 또는 대체복무 수행 중에 건강을 해치거나 순직한 자는 그 자신 또는 친족을 위하여 연방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0조(조직, 훈련, 군수품)

① 군법 제정 및 군대의 조직, 훈련 및 군수품에 관한 것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삭제]

③ 연방은 정당한 보상하에 주의 군사시설을 환수할 수 있다.

제61조(민방위)

① 민방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민방위의 임무는 무력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② 연방은 재난 및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민방위의 투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③ 연방은 남성에 대하여 민방위 복무를 의무화할 수 있다. 여성은 자원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 연방은 민방위 복무로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⑤ 민방위 복무 수행 중에 건강을 해치거나 순직한 자는 그 자신 또는 친족을 위하여 연방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

제61a조(스위스 교육 공간)

① 연방 및 주는 각각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 스위스 교육공간의 질을 향상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② 연방 및 주는 공동기관을 통하여 협력하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호 공조한다.

③ 연방 및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한다.

제62조(공교육)

① 공교육은 주의 권한에 속한다.

② 주는 모든 아동들에게 개방된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기초교육은 의무이며, 공공기관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③ 주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최장 20세까지 충분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④ 의무교육제, 입학연령, 교육의 기간 및 목표수준, 진급 및 학위인정과 관련된 공조노력이 조율되지 못하는 경우에 연방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한다.

⑤ 연방은 신학년 개학을 규율한다.

⑥ 주는 주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연방법의 제정안

작성에 참여한다. 주의 의견은 특별한 비중을 가진다.

제63조(직업교육)

① 연방은 직업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직업교육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촉진한다.

제63a조(고등교육원)

① 연방은 연방기술전문학교(écoles polytechniques fédérales)를 운영한다. 연방은 고등교육원 및 고등교육원에 상응하는 학원을 설립, 인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주립고등교육원을 지원하고, 연방이 인가하는 고등교육원에 상응하는 학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방 및 주는 스위스 고등교육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를 보장한다. 고등교육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원 및 여러 책임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동일한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④ 연방 및 주는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공동기관에 위임한다. 법률은 공동기관에 위임될 수 있는 권한 및 그 조직과 공조절차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⑤ 연방 및 주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방은 교육수준, 진급, 평생교육, 학원 및 학위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또한 연방은 고등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균일한 재정지원의 원칙과 연계시키고, 지출이 수반되는 분야의 임무를 고등교육원간에 분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4조(연구)

① 연방은 과학적 연구 및 혁신을 진흥한다.

② 연방은 과학적 연구 및 혁신의 진흥에 있어서 질적 보증 및 조정 보장을 통하여 그 지원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연방은 연구소들을 운영, 설립 및 인수할 수 있다.

제64a조(평생교육)

① 연방은 평생교육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② 연방은 평생교육을 장려할 수 있다.

③ 법률은 그 분야 및 기준을 정한다.

제65조(통계)

① 연방은 스위스의 인구, 경제, 사회, 교육, 연구, 국토 및 환경에 관한 현황과 추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② 연방은 합리적인 수집을 위하여 공적 기록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66조(교육지원)

① 연방은 고등교육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방은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주 간의 조화를 장려하고 그 지원에 관한 원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공교육에 관한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주의 조치들을 보완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67조(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장려)

① 연방 및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계발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② 연방은 주의 조치들을 보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7a조(음악교육)

① 연방 및 주는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음악교육을 장려한다.

② 연방 및 주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학교가 양질의 음악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의 노력이 학교 내에서의 음악교육의 목표에 합치하지 못할 때, 연방은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③ 연방은 주의 참여 하에 청소년의 음악활동에 대한 접근과 음악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원칙을 정한다.

제68조(체육)

① 연방은 체육을 비롯한 운동을 장려한다.

② 연방은 체육학교를 운영한다.

③ 연방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다.

제69조(문화)

① 문화는 주의 관할에 속한다.

② 연방은 교육증진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유익한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적·음악적 표현을 진흥한다.

③ 연방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고려한다.

제70조(언어)

① 연방의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이다. 또한 연방과 레토로망어 사용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레토로망어도 연방의 공용어이다.

② 주는 주의 공용어를 정한다. 주는 언어공동체 간의 조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언어권 분배를 고려하고 소수의 토착 언어를 감안한다.

③ 연방 및 주는 언어공동체 간의 이해와 교류를 장려한다.

④ 연방은 다언어를 사용하는 주에 대하여 그 특수한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⑤ 연방은 레토로망어 및 이탈리아어를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Graubünden주 및 Ticino주가 취한 조치들을 지원한다.

제71조(영화)

① 연방은 스위스의 영화제작 및 영화문화를 진흥할 수 있다.

② 연방은 다양하고 우수한 영화작품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2조 (교회와 국가)

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주의 관할이다.

② 연방 및 주는 다양한 종교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슬람 첨탑의 건축은 금지된다.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

제73조(지속가능한 개발)

연방 및 주는 자연의 지속적인 균형, 특히 자연의 재생능력 및 인간의 자연이용에 관한 지속가능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4조(환경보호)

① 연방은 인간 및 그 자연환경을 유해하고 불쾌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인간 및 자연환경에 유해하고 불쾌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방지비용 및 복구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법률에서 연방의 소관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규정은 주가 집행한다.

제75조(국토계획)

① 연방은 국토계획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국토계획은 주의 관할이며, 적절하고 경제적인 토지의 활용 및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에 이바지한다.

② 연방은 주의 노력을 장려하고 조정하며, 주와 협력한다.

③ 연방 및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75a조(측량)

① 국가의 토지측량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연방은 토지측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③ 연방은 공식적인 토지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5b조(별장)

① 별장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주거단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대지의 총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시가 주된 주거 할당량 계획 및 계획 실행의 상세한 상황을 매년 발표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76조(수자원)

①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보호 및 수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방은 수자원 보전, 이용, 에너지 생산 및 냉각수의 이용과 기타 수자원의 순환작용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③ 연방은 수자원의 보호, 적절한 방류량의 유지, 하천 정비, 댐의 안전과

침전물 조절과 관련된 조치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④ 주는 수자원을 보유한다. 주는 연방법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방은 그 대중운송기업을 위하여 수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불한다.

⑤ 연방은 해당 주의 협조 하에 국제적인 수자원에 대한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해당 수자원의 사용세를 정한다. 해당 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이 결정한다.

⑥ 연방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원지가 존재하는 주의 이익을 고려한다.

제77조(삼림)

① 연방은 삼림이 그 보호적·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연방은 삼림보호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③ 연방은 삼림보존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78조(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호)

①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호는 주의 관할이다.

② 연방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연방은 경관, 지역의 지형 유산 및 자연적·문화적 유적을 관리한다. 연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보존한다.

③ 연방은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국익과 관련된 대상을 계약 또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

④ 연방은 동·식물군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다양성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한다.

⑤ 특히 아름답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 및 늪지를 보호한다. 습지 및 늪지에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해

당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농업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제79조(어업 및 수렵)

연방은 어업 및 수렵이나 어류, 야생 포유류, 조류의 다양성 유지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제80조(동물의 보호)

① 연방은 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다음 사항을 규율한다.

a. 동물의 보호 및 관리

b. 동물실험 및 동물 보존

c. 동물의 이용

d.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입

e. 동물의 거래 및 수송

f. 도축

③ 연방규정은 법률에서 연방이 집행하도록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가 집행한다.

제5절 공공 공사 및 교통

제81조(공공 공사)

연방은 국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 공사를 시행, 개발 및 장려할 수 있다.

제81a조(대중교통)

① 연방과 주는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철도, 도로, 수로 및 케이블카를 통해 충분한 범위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이때 철도 화물 수송

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다.

② 대중교통의 비용은 적절한 범위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으로 충당한다.

제82조(도로교통)

① 연방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 도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교통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할 통과도로를 정할 수 있다.

③ 공공도로의 사용은 무료이다. 다만, 연방의회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83조(국도)

① 연방과 주는 국가의 모든 지역에 충분한 도로 기반시설을 보장한다.

② 연방은 국도망의 건설과 그 이용을 보장한다. 연방은 국도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관리한다. 연방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연방은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민관합동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알프스 통행)

① 연방은 알프스 지역을 교통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연방은 알프스 지역의 교통이 인간, 동물, 식물 및 생활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② 알프스를 경유하는 국경 간 화물운송은 철도를 이용한다. 연방내각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 예외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써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 알프스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허용량을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을 경유하는 교통량을 경감하기 위한 우회도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5조(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요금)

① 연방은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또는 요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재량 또는 사용정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요금의 순수입은 도로교통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는 순수입의 일부를 수령한다. 그 비율을 산정할 때에 요금 부과는 산악지역 및 도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제85a조(국도 통행요금)

연방은 대형 중량차량의 통행요금 납부 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트레일러에 대한 국도 통행요금을 정한다.

제86조(도로 수송과 그 비용 처리)

① 국도를 관리하고, 도시와 교외 지역에 도로 수송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항목은 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a. 제85a조에 의거한 국도 통행요금의 순수익

b. 제131조 제1항 d에 의거한 특별소비세의 순수익

c. 제131조 제2항 a에 의거한 부가세의 순수익

d. 제131조 제2항 b에 의거한 세금의 순수익

e. 제131조 제1항 e에 의거한 항공연료를 제외한 모든 원동기연료 순수익의 일부; 이는 위 c에 의거하여 9퍼센트를 준수하여야 하고, 항공연료를 제외한 모든 원동기연료 순수익 절반의 9퍼센트를 준수하여야 하나 연 3억 1천만 프랑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물가연동은 법률로써 규율한다.

f. 제131조 제1항 e에 의거한 항공연료를 제외한 모든 원동기연료 순수익의

10퍼센트

g. 새롭게 건설한 국도의 추가비용 마련을 위한 제3항 g의 분담금 및 주기부금으로 창출한 수익

h. 도로 수송에 관한 기타 법률에 의한 비용

③ 다음과 같은 도로 수송과 그 비용 조달을 위하여 특별한 예산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복합운송 및 자동차와 운전자 수송을 장려하기 위한 분담금

b. 간선도로 비용 조달을 위한 분담금

c.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의 건축분담금, 도로교통의 영향으로부터 환경 및 전원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한 분담금

d. 동력차량 전용고속국도의 자금조달에 관한 주의 일반 분담금

e. 국도가 없는 주에 대한 분담금

f. 연구 및 행정 지원 분담금

g. 제2항 g에 따른 분담금

④ 특별예산은 제131조 제1항 e에 의거하여 항공연료를 제외한 모든 원동기연료 순수익의 절반에 할당되어야 한다.

⑤ 특별예산이 필요함이 증명된 때에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31조 제1항 d에 의거한 소비세 수익이 이 특별예산에 할당되어야 한다.

제87조(철도 및 기타교통)

철도교통, 케이블카 운행, 선박항해, 항공 및 우주 비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소관사항이다.

제87a조(철도 기반시설)

① 철도 기반시설의 자금조달은 1차적으로 연방이 부담한다.

② 철도 기반시설의 자금은 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다음 재원을 해당 기금에 배정한다.

a. 제85조에 따른 대형 화물차량 통행요금 수입의 최대 3분의 2

b. 제130조 제3의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상 수입

c. 개인에 대한 연방직접세 징수액의 2.0퍼센트

d. 연방일반예산에서 매년 23억 프랑. 이 금액의 물가연동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는 철도 기반시설 자금조달에 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법률로 제3자로부터의 추가 자금조달을 정할 수 있다.

제87b조(항공교통과 그 비용 처리)

항공연료 소비세 순수익의 절반과 추가요금은 항공교통에 관한 다음과 같은 비용에 사용된다.

a. 항공교통에 따른 환경보호조치에 대한 분담금

b. 테러공격과 항공기 납치를 비롯한 항공교통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담금; 이러한 분담금은 국가의 책임이 아닌 부분에 한정된다.

c. 항공교통 안전의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담금

제88조(인도,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

① 연방은 인도,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를 위한 도로망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② 연방은 인도,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를 위한 도로망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의 조치들을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주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연방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도,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를 위한 도로망을 감안하고, 폐쇄도로를 위한 대체도로를 마련한다.

제6절 에너지 및 통신

제89조(에너지 정책)

① 연방 및 주는 각각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고 다양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방은 지역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이용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③ 연방은 시설물, 차량 및 기기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약 및 재생 에너지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④ 건물의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치는 일차적으로 주의 소관사항이다.

⑤ 연방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주, 자치단체 및 산업계의 노력을 감안한다. 연방은 각 지역의 개별적인 상황 및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한다.

제90조(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제91조 (에너지 수송)

① 연방은 전력의 수송 및 공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료수송관을 통한 수송설비나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연료의 수송설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제92조(우편 및 정보통신)

① 우편 및 정보통신 사업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연방은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이고 적절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우편 및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요금은 통일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정한다.

제93조(라디오 및 텔레비전)

①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공영 방송에 의한 제작물 및 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문화 형성과 발전, 자유로운 의견의 형성 및 오락에 기여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국가의 특수성과 주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사건을 충실하게 보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한다.

③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독립성 및 방송 편성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④ 기타 방송매체나 언론의 역할 및 임무는 감안되어야 한다.

⑤ 방송에 관한 불만은 독립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